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06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정재웅 의원(1명)

찬 성 자: 김종무, 김태수, 김평남,
김혜련,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아량,
이영실, 이정인, 장상기,
전석기, 최웅식, 황규복
의원(15명)

1. 제안이유

- 방범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한 시설이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또는 화재 발생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시설에 한정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생략)</p> <p><u><신 설></u></p>	<p>제9조(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방법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법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법시설이어야 한다.</p>